

제28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2. 3. 22.(화)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8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1. 제안경과

본 동의안 2022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을 추진함에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임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

## 3. 주요내용

- 위탁 개요  
- 대상시설 : 1개소

대상지	GH 경기행복주택 다산지금 A-5BL
소재지	남양주시 다산동 6110
규모/세대수	69.4㎡(전용면적)/ 2,708세대

- 위탁사업 내용 : 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 등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여성아동과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산동 경기행복주택 다산지금 A-5블럭에 69.4㎡를 위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7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추가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으로 돌봄센터 수탁기관 한 곳이 여러 곳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한은 없으나, 수탁기관 선정 시 서비스의 다양성과 지역공동체 참여 활성화 및 지역에 돌봄기관 균형 분포 측면을 고려하여 여러 법인·단체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다함께돌봄센터 지정 및 위탁현황 >

연번	위치	명칭	면적(㎡)	정원	개소일	수탁기관	의회의결
1	진접읍(LH17단지)	1호점	158	30	2019.11.01.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2019.4.
2	화도읍(라운3단지)	2호점	138	30	2020.05.01.	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20.3.
3	별내동(위스테인)	3호점	75.5	20	2020.11.02.	위스테인별내 사회적협동조합	2020.7.
4	별내동(별사랑2-9단지)	4호점	128.42	30	2020.11.02.	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20.7.
5	별내동(별가람 1-8단지)	5호점	17.29	20	2021.10.01.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2020.7.
6	별내동(별빛마을3-6단지)	6호점	87.78	20	2021.11.02.	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21.6.
7	별내동(별사랑2-10단지)	7호점	83.71	20	2021.12.21.	별나라꿈길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021.6.

##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조례)

###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8.08 조례 제1670호

(일부개정) 2020.09.24 조례 제17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돌봄 아동”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기준에 우선 근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0. 9. 24.>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2. 다자녀 가정
3. 초등학교 저학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비용) ① 센터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장은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9. 24.>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9. 24.>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개정 2020. 9. 24.>
2. 돌봄시설 간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개정 2020. 9. 24.>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계획의 수립<개정 2020. 9. 24.>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개정 2020. 9. 24.>
5.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9. 24.]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4.>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0. 9. 24.>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담당 국장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9. 24.>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돌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남양주경찰서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4. 돌봄시설 이용 아동 학부모 대표<개정 2020. 9. 24.>
5. 돌봄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0. 9. 24.]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忌避) 신청이 있으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9.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 9. 24.>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4.>

제14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9. 24.>

제15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79,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

### 3 위탁기준

#### 가. 운영방

- (기본원칙)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
- (예외)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 가능\*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4조의 2 제2항)

\* 위탁운영자 신청자격이 없는 단체(주민협의체 등)의 경우는 상기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운영 방식으로 참여 가능(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관리,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운영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 나. 수탁자 신청자격

##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1.1.1.1. ● (기본원칙)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1.1.1.2. ● (예외) 지정위탁 가능

1.1.1.2.1. -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단, 지정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이 있어야 함

1.1.1.2.2.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0.4.)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위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할 것

1.1.1.2.2.1. ※ 위탁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1.1.2.2.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와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1.1.1.2.2.3. •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1.1.1.2.2.4. ①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

1.1.1.2.2.5. ② 수탁자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탁계약이 해지됨

(단, 수탁 받은 법인이 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을 지체 없이 교체한 경우는 예외로 함)

1.1.1.2.2.6. ③ 위탁계약기간 중에 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1.1.1.3. ●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함

1.1.1.3.1.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

\*\*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1.1.1.4.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예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비영리법인이 지역 내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해온 경우 등

1.1.1.5. ●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당해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야 함

1.1.1.6.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 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위탁을 위하여 기존에 있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가능